



ANDREW M. CUOMO
주지사

Homes and Community Renewal

RUTHANNE VISNAUSKAS
국장/CEO

이민 상태, 주거 차별 및 임차인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과 뉴욕 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에 따라(1) 특정 보호 특성에 근거하여 임대, 매도, 용자, 보험,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2) 특정 보호특성에 근거하여 다른 조건을 적용하거나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차별적진술 또는 광고를 제작, 인쇄, 공개, 유포하는 행위, (4) 특정 보호 특성에 근거하여 주거가능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5)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 강제, 위협하는 행위, (6) 보복하는 행위, (7) 특정 보호 특성에 근거하여 대출이나 그와 관련된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다른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8)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위협,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Fair Housing Act와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의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뉴욕 주 주민은 연방 Fair Housing Act와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의보호를 받습니다.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와 Fair Housing Act 외에도 자체적인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이 제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여러 가지 보호특성(인종, 종교, 피부색, 장애, 국적, 성적 지향, 군 입대 여부, 나이, 성별, 혼인 여부, 가족관계)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초한 차별은 피해자의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예:

- 주거 제공자가 인종을 이유로 더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민 상태와관계없이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합니다.
- 임대인이 국적을 이유로 다른 금액의 임대료나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민상태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 괴롭힘이란 무엇입니까?

뉴욕 주 법률과 일부 지방 법률에서는 임대인 및/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안정화법과 뉴욕 시 지방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임차인의 편안함, 평화, 휴식, 향유를 방해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거나, 임차인이 해당 주거 시설을 비우게 하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 임대인이 문을 두드리거나, 겨울에 난방을 끄거나, 언어 폭력으로 아파트를 비우게하려는 행동을 취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임차인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4.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귀하는 여러 가지 관련 주거법에 따라 임차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안정화법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귀하를 보호합니다.

귀하가 임대료 규제 시설에 주거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번호로 뉴욕 주 주택 및 지역 재건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문의 사항은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 국적 차별은 무엇입니까?

국적 차별은 조상, 민족성, 출생지, 문화 또는 언어로 주거에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국가 출신이거나, 특정 국적집단과 관련된 이름, 억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국적 집단과 관련된 관습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거 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종교/신념 차별은 무엇입니까?

종교/신념 차별은 귀하의 종교, 진술 또는 신념 체계, 원칙, 의견을 이유로 주거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는 불법입니다. 주거 제공자는 귀하의 종교를 물을 수 없으며, 타인이 인식한 또는 실제 귀하의 종교/신념을 이유로 귀하의 주거 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7. 주거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주거 차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 주소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ew York 10458
수신자 부담 전화 (888) 392-3644
TDD/TTY (718) 741-8300
홈페이지: <http://www.dhr.ny.gov/>

공정 주거 가이드: <https://dhr.ny.gov/sites/default/files/pdf/nysdhr-fair-housing-guide.pdf>

8. 임차인 괴롭힘을 당했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임대료 규제 시설에 거주하고 임차인 괴롭힘을 당했다면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YS Homes & Community Renewal
Tenant Protection Unit
641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22

이메일: TPUinfo@nyshcr.org

홈페이지: <https://hcr.ny.gov/tenant-protection-unit>

임대료 규제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지역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